

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
제2차 정례회 행정·재무위원회
【2022. 11. 16.(수) 10:00】

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

(행정관리국)

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
행 정 · 재 무 위 원 회

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

(행정관리국)

2022년 11월 16일

전문위원 장석현

I. 안건명: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

II. 제출근거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1)

III. 기금현황: 박물관등의소장용유물 · 작품구입기금

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

IV.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안

1. 기금별 기금 운용 총칙

가. [박물관등의소장용유물 · 작품구입기금] 운용 총칙

- 설치근거: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 · 작품 구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- 설치목적: 박물관등의 소장용 유물·작품 구입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
- 설치년도: 2006년
- 재원조성: 일반회계 출연금, 박물관 등의 관람료, 사용료 등 수입금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

1)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· 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○ 기금 조성규모

(단위: 천원)

2022년도말 조성액	2023년도 조성계획			2023년도말 조성액
	수입(A)	지출(B)	증감(A-B)	
484,870	300,000	605,000	△305,000	179,870

- 박물관등의소장용유물·작품구입기금의 2023년도말 조성 규모는 1억 7,987만원이며,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·작품 구입비 등의 지출계획으로 전년도말 대비 3억 5백만원 감소함

나. [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] 운용 총칙

- 설치근거: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- 설치목적: 강서문화센터 이전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관리·운용을 통한 노후화된 강서문화센터 이전 건립의 안정적 추진
- 설치년도: 2015년
- 재원조성: 일반회계 출연금, 교부금 및 일반기탁금 등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
- 기금 조성규모

(단위: 천원)

2022년도말 조성액	2023년도 조성계획			2023년도말 조성액
	수입(A)	지출(B)	증감(A-B)	
1,248,947	10,000	1,150,000	△1,140,000	108,947

-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의 2023년도말 조성 규모는 1억 894만 7천원이며, 강서문화센터 건립비 등 지출계획으로 전년도말 대비 11억 4천만원 감소함

2. 기금별 자금운용계획

가. [박물관등의소장용유물·작품구입기금]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

(단위: 천원)

수입계획		지출계획	
항목	수입액	세부사업	지출액
합 계	784,870	합 계	784,870
사용료수입	48,000	비용자성 사업비	605,000
이자수입	10,000	예치금	179,870
기타수입	42,000		
예치금회수	484,870		
전입금	200,000		

-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계상하는 것으로 박물관등의소장용유물·작품구입기금의 수입계획은
 - 사용료수입, 이자수입, 기타수입으로 1억원을 계상하고
 - 예치금회수는 '22년도 말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 4억 8,487만원을 계상함
 -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을 계상함
- 지출계획은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모든 지출을 지출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박물관등의소장용유물·작품구입기금의 지출계획은
 - 비용자성사업비는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·작품 구입비 등으로 6억 500만원을 계상함
 - 예치금은 금융기관의 만기회수 등 기금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금액으로 1억 7,987만원을 계상함

나. [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]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

(단위: 천원)

수입계획		지출계획	
항목	수입액	세부사업	지출액
합 계	1,258,947	합 계	1,258,947
이자수입	10,000	비용자성 사업비	1,150,000
예치금회수	1,248,947	예치금	108,947

-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계상하는 것으로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의 수입계획은
 -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,000만원을 계상하고
 - 예치금회수는 '22년도 말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 12억 4,894만 7천원을 계상함
- 지출계획은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모든 지출을 지출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의 지출계획은
 - 비용자성사업비는 강서문예회관 건립비 등으로 11억 5,000만원을 계상함
 - 예치금은 금융기관의 만기회수 등 기금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금액으로 1억 894만 7천원을 계상함

3. 종합의견

-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「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
- 박물관등의소장용유물·작품구입기금은 허준박물관 및 겸재정선미술관에 학문적·예술적으로 소장할 가치가 높은 유물과 작품 구입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으로, 이번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여 공공문화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유물 및 작품 구입비 등으로 6억 5백만원을 계상함
-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은 노후화된 강서문화센터 이전 건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'23년 준공을 앞두고 문화센터 건립비 및 사무가구 구입 등의 자산취득비 등으로 11억 5,000만원을 계상함
- 기금은 특정한 목적사업을 적극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금이며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재원을 활용한 고유 목적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설치 목표 달성에도 부합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

< 예산과 기금의 비교표 >

구 분	일 반 회 계	특 별 회 계	기 금
설치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자치단체의 일반적 재정활동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특정세입으로 특정 세출에 충당 ▪ 특정사업 운영 ▪ 특정자금 보유 운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특정목적 및 시책 추진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
재원조달 및 운용형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공권력에 의한 지방세 수입과 무상적 급부의 제공이 원칙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형태 혼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출연금,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으로 용자사업 등 수행
확정절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사업부서 예산요구, 예산부서 예산안편성, 지방의회 심의·의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좌 동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기금운용부서 계획 수립 예산부서 협의·조정, 지방의회 심의·의결
집행절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집행과정에서도 합법성에 입각한 통제가 가해짐 - 예산의 목적외사용 금지원칙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좌 동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집행과정에서는 합 목적성 차원에서 자율 성과 탄력성이 보장
수입과 지출의 연 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배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좌 동
계획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추경예산 편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좌 동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주요항목(분야·부문·정책사업) 지출금액의 20% 초과 변경시 지방의회 의결
결 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지방의회 심의·승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좌 동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좌 동

「지방자치법」

제159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(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)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9조(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) ①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.

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, 기금의 조성·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.

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, 수입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(章)·관(款)·항(項)으로 구분하고,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기능별·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·부문·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, 세부항목은 단위사업·세부사업·목으로 구분한다.